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603호
- 나. 제안자 : 서상열 의원(찬성자 13명)
- 다. 제안일 : 2026년 3월 31일
- 라. 회부일 : 2026년 4월 7일

2. 제안이유

-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공자산으로서 남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보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정책의 공유와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한 이용 제한 근거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남산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의 지정, 회의록 작성 기준 및 그 밖의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경우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 나. 곤돌라 시설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제한의 기준·대상·절차 및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곤돌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감면 대상(교통약자 및 그 보호자 1인)을 정하고, 이용료 금액과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라. 남산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표현을 “한 차례”에서 “1회”로 정비 함(안 제16조제4항)
- 마. 남산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의 지정, 회의록 작성 기준 및 그 밖의 운영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산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보완시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남산발전위원회의 간사 지정, 회의록 작성 등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시의회와의 정책 공유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제5항)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남산공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¹⁾ 그 계획에는 발전목표와 추진방향, 생태환경 보전, 여가공간 조성 및 활용,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상위 계획으로는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있으며, 활성화계획에서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계획 목차(안)을 제시한 바 있음(붙임 1 참조)
-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 등 발전적 방향으로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조례는 2024.05.20. 제정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신규 수립할 예정임

구분	내 용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p>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남산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한 남산공원의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의 여가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 관련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공원 생태환경과 여가공간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생태환경의 회복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p>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이 남산의 보전과 이용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립 및 수정·보완 과정에서 시의 회와의 정책 공유 및 의견 수렴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사전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와의 소통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u>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u>

“곤돌라 시설의 이용 제한 및 이용료 감면 등 운영·관리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이번 일부조례개정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은 남산 곤돌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용 제한의 기준·대상·절차 및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남산 곤돌라 시설 도입²⁾은 기존 공원 보존을 위해 관광버스 진입제한(’21.8월)³⁾ 이후 대중교통 및 보행 중심 이용체제로 전환되면서 남산 정상부 접근에 대한 불편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 관광 수요 증가와 남산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 확보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는 것임

2)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및 공공자원 마련을 위해 남산공원 내에 곤돌라(「궤도운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돌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곤돌라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 보전

2.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 재원의 조성

3)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녹색순환버스 개선 추진계획 보고」, 2021.5. “남산공원 내 경유버스(관광버스) 진입제한 시행(’21.8. 전면제한)”

사업개요		조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예장공원(하부) - 남산정상(상부) · 사업기간 : '23.6월 ~ '27.하반기 · 곤돌라 재원 		
노선길이	약 832m	
캐빈규모	10인승(25대)	
수송능력	1,600~2,000(인/hr)	

출처: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곤돌라 시설은 관광객 및 시민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로 기상상황·이용객 밀집도·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이용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곤돌라 시설 도입에 따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이용 제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용 제한의 기준·대상·절차 및 운영·관리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공공시설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현 행	개 정 안
	<u>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 ·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

-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곤돌라의 이용료 부과시⁴⁾ 교통약자인 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과 그 보호자 1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이용료와 감면율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

구분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교통약자에게 한정할 경우 공익적·복지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서울시 공공시설 감면체계⁵⁾와 유사한 수준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4)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그 밖의 이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보호자 또는 동반자 1명까지 일률적으로 포함하기보다는 이용자 본인 중심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 및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이용료의 금액 감면율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이용 수요, 운영 여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과 그 보

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10090호) 제9조(입장료) 및 제10조(사용료의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현행	개정안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u>호자 1인</u></p> <p>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u>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과</u> <u>그 보호자 1인</u></p> <p>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 <u>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4항 및 안 제18조)

- 남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조례 제15조6)에 따라 남산공원 관련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제16조제4항7)은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회”로 변경하는 것은 조문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현행 조례 제18조제5항8)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사의 지정 주체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간사를 1인으

6) 제15조(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산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산공원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설정에 대한 사항
2. 남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
4. 남산공원 여가공간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 및 남산 주변부의 보전과 관리, 시민참여 등 필요한 사항

7)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8)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로 하되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기록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⁹⁾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생략)</p> <p>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u>간사를 둘 수 있다.</u></p> <p><신 설></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1회</u>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u></p> <p>⑥ <u>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u></p>

9) 관련 조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0항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 1명과 위원회 주관과의 과장으로 지명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24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관리과장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신 설>

작성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
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시의 회와의 정책 공유 절차와 곤돌라 시설 운영과 관련한 이용 제한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남산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남산공원 기본계획은 남산의 보전과 이용 방향을 정하는 핵심 계획임에도 그간 시의회와의 사전 공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에서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또한 곤돌라 시설은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이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 등을 배려한 감면 대상 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도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감면대상을 장애인·고령자·취학 전 아동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등 공익적·복지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까지 일률적으로 포함하기보다는 감면범위를 이용자 본인 중심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 및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그 외 감면이 필요한 대상자와 이용료 및 감면율 등의 세부사항

을 규칙에 위임한 점은 곤돌라 시설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남산발전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연임 횟수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간사의 지정 및 회의록 작성 의무를 구체화하며 그 밖의 운영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기록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는 적절한 개선으로 판단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비고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곤돌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른 이용 제한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곤돌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u>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u>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과 그 보호자 1인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과 그 보호자 1인 	<p>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p>감면대상을 서울시 공공시설 감면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되, 감면 범위는 이용자 본인 중심으로 정비하여 제도의 명확성 및 행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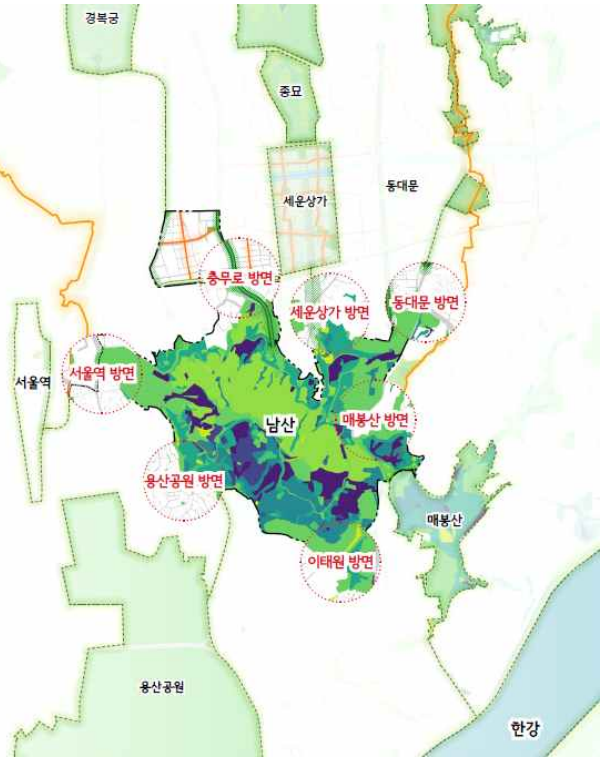
		<p><u>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p> <p>6.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p> <p>7.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8. 「<u>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u>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u>」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p> <p>9. <u>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u>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p>	
<p><신 설></p>	<p>③ <u>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등 세부 사항은</u> 규칙으로 정한다.</p>	<p>(개정안과 같음)</p>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u>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 ----- ----- <u>1회</u>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u>간사를 둘 수 있다.</u>	⑤ ----- ----- <u>간사 1인</u> 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⑥ <u>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u>	⑥ (개정안과 같음)	

	<u>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u>	⑦ (개정안과 같음)	

<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수법의 다원화
- 녹지 중심 계획으로 재편



< 대상지 주변 관련 계획 >

- 신속통합기획 등 남산 주변부 남산 경관축 및 보행 연계

	관련 계획
명동	① 명동 제1지구 정비계획
회현동	②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후암동	③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④ 동후암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⑤ 동후암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동의서 징구 중)
용산 2가동	⑥ 동후암3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⑦ 남산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신청)
	⑧ 남산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⑨ 용산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⑩ 용산4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동의서 징구 중)
용산 3가동	⑪ 남산3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동의서 징구 중)
	⑫ 용산3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신청)
	용산공원 조성계획(2027년 예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필동	⑬ 세운재정비촉진계획
	⑭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장충동	⑮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⑯ 다산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완료)
이태원2동	⑰ 이태원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⑱ 이태원동73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계획(후보지)

